

## 發 刊 辭

厚巖 郭潤直教授께서는 1958년 4월에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專任講師로 就任하신 후 오는 2월 26일 停年退任하게 되었다. 만 33년동안 서울法大에 勤務하시는 동안 처음에는 西洋法制史·로마法·獨逸法을 講義하셨으나, 대부분 民法(財産法)을 講義하셨으며 研究는 주로 物權法에 置重되었으며 따라서 物權法에 獨步의인 著書와 論文이 많다. 그동안 16권의 著書와 25편의 獨創的인 論文을 쓰셨다. 明瞭하고 뛰어난 講義로 法學教育에 큰 貢獻을 하셨을 뿐 아니라 獨創的이고 卓越한 研究를 통하여 民法學을 우리나라에 定着시키는데 큰 寄與를 하셨다.

특히 1977년 2월에는 學界·實務界의 人士로 「民事判例研究會」를 새로 발족시켜서 매월 民事法에 관한 研究發表會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매년 「民事判例研究」라는 單行本으로 발간하여 현재 이 책은 12권에 이르고 있어 民法學界와 實務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厚巖 郭潤直教授께서 停年退任하시게 된 것은 본 大學의 教授 및 學生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과 섭섭함을 금할 길 없으나 아직 대단히 健康하시고 계속 研究를 하실 수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研究를 하셔서 우리나라 民法學 발전에 더욱 더 寄與를 하실 것으로 믿는 바이다. 지금까지의 不滅의 業績에 대하여 깊은 尊敬의 뜻을 표하며 萬壽無疆하실 것을 기원하는 바이다.

1990년 12월 25일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黃 迪 仁